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만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의존적인 노인층의 증가는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 학대에 관한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서 외부의 노출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노부모 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曹愛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인구구조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그만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인구가 많아짐을 뜻하며, 이는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증가시켜 노부모 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직까지 상당수의 노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고, 노인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미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부모 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부모 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 학대에 관한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서 외부의 노출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와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¹⁾를 중심으로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노부모 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노부모 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부모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학대가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가와 그 유형 및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경우에 노부모 학대로 볼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노부모 학대의 가해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비동거

중인 가족원, 기타 친족원 등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가족원인 경우에도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노부모를 부양하지는 않지만 가족원일 경우 모두 포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폭력이나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고,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정신적 고통, 공포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언, 모욕 등을 말하며, 경제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때로 협박, 폭력, 거짓말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방임(negligence)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거부 또는 불이행과 무관심, 권리침해 등을 말한다.²⁾

이제까지 대부분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자녀 및 기타 친·인척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노부모 학대에 초점을 두어 배우자의 학대는 제외하였으며,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기타 친·인척으로서 주로 비속(卑屬)에 속하는 대상으

1) 전국의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 2개소씩 선정하여 동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 만 65세 이상 노인 865명을 대상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2) 이해영,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추계호, 통권 제3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김미혜·이선희,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제136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로 한정하였다.

학대유형³⁾에 있어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형으로서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빈도는 노인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 달리 단 한 번의 폭력이나 단순한 밀침 등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학대 등은 신체적 폭력, 학대보다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1년 동안의 노인 자신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노부모 학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기타 가족원으로서 주로 비속에 속하는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에 관한 학대를 받은 대상으로 하였다.

3. 노부모 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1) 노부모 학대 피해자의 일반특성

전체 응답노인의 평균연령은 71.2세인데 비해 피해노인들의 평균연령은 72.0세로 피해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으며, 성별로도 전체 응답노인보다 피해노인들의 평균 연령

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나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88.7%)이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92.6%가 중학교 이하로 남자노인에 비해 학력이 낮은 편이다. 결혼상태는 69.0%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서 남자노인들보다 여자노인들의 무배우율이 높은 편이다(남자노인: 58.8%, 여자노인: 72.2%).

이들 학대 피해노인들의 가구유형을 보면 학대 피해노인들 중 59.1%가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로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노인 혼자 살고 있거나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여자노인(42.6%)이 남자노인(35.3%)에 비해 높았다.

2) 노부모 학대 가해자의 일반특성

노부모 학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그로 인한 부양 스트레스가 노부모 학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외 부양자의 성격특성도 학대요인이 되고 있다. 즉, 부양자가 자아존중감이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노부모와 한 집에서 생활할수록 학대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부양자의 무능력과 빈곤 등도 학대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4.6세로 남자는 45.7세, 여자는 43.6세였다. 교육수준은 71.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이

3) 본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노부모 학대 측정을 위한 항목은 Straus(1979)가 폭력행위로 규정한 항목과 김미혜 등(1998)이 노인학대 측정도구로서 개발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대유형별 구체적인 항목은 조애저 외,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1999)를 참조할 것.

표 1. 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특성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평균 연령(세)		73.7	71.5	7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5	92.6	88.7
	고등학교 이상	23.5	7.4	11.3
결혼상태	유배우	41.2	27.8	31.0
	무배우	58.8	72.2	69.0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35.3	42.6	40.9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64.7	57.4	59.1
계 (수)		100.0 (17)	100.0 (54)	100.0 (71)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표 2. 가해자의 성별 특성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평균 연령(세) ¹⁾		45.7	43.6	44.6
교육수준 ²⁾	중학교 이하	32.6	25.0	28.6
	고등학교 이상	67.4	75.0	71.4
결혼상태 ²⁾	유배우	87.2	94.1	91.1
	무배우	12.8	5.9	8.9
노인과의 관계 ³⁾	아 들	93.0	-	42.6
	며느리	-	82.4	44.7
	기 타 ⁴⁾	7.0	17.6	12.8
취업률		59.0	40.4	48.8
계 (수)		100.0 (43)	100.0 (51)	100.0 (94)

주: 1) 무응답 1명 제외

2) 무응답 3명 제외

3) 무응답 4명 제외

4) 기타에는 딸, 사위, 조카 등이 포함됨.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높았다(남자: 67.4%, 여자: 75.0%). 결혼상태는 91.1%가 유배우 상태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유배우 비율이 더 높았다. 다른 조사결과와는 달리 본 조사의 교육수준과 결혼상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높거나 유배우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연령이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 학력이 높고 유배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가해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42.6%, 며느리가 44.7%, 딸·사위 등은 12.8%로서 노인의 자녀가 51.1%, 자녀의 배우자 및 기타는 48.9%이다. 또한 이들의 취업률은 48.8%로 남자 가해자는 59.0%가, 그리고 여자 가해자는 40.4%가 취업중이었다. 이는 15세 이상 성인 남녀의 취업률보다 낮은 수준이다.⁴⁾

4. 노부모 학대 실태

1) 피해노인의 학대경험률

전체 응답노인 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의 경우는 8.3%, 여자노인들은 8.2%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는 않는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높은 학대경험률을 보여 74세 이하의 전기노인층에서는 7.7%만이 학대경험이 있는데 비해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층에서는 9.9%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노인들은 9.3%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들은 4.7%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저학력층에서의 학대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는 5.9%가, 그리고 무배우인 경우에는 10.2%가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배우상태에 따른 학대경험률의 차이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들만이 사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6.7%가 학대를 경험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10.0%가 학대를 경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들로부터의 학대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노인들의 성별·연령별 학대경험률을 보면 74세 이하 전기노인층의 경우 남자노인들 중에는 5.4%가, 그리고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8.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들의 학대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층에서는 남자노인들 중에서는 16.1%가 경험한 반면,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7.2%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연령별 학대 경험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남자노인의 학대경험률이 높았으나(남자노인: 12.9%, 여자노인: 8.7%)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자노인의 학대경험률이

4) 통계청 자료(1999)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취업률은 56.5%로 본고의 가해자 취업률(48.8%)보다 높으며, 성별로도 본고의 가해자 취업률이 낮음(15세 이상의 남자 69.4%, 여자 44.4%; 남자 가해자 59.0%, 여자 가해자 40.4%).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수준과 노부모 학대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3. 전체 응답노인의 특성별 학대경험 비율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전체		8.3	8.2	8.2
연 령	65~74세	5.4	8.4	7.7
	75세 이상	16.1	7.2	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9	8.7	9.3
	고등학교 이상	4.0	5.7	4.7
결혼상태	유배우	4.3	7.2	5.9
	무배우	24.4	8.9	10.2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5.1	7.3	6.7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12.8	9.2	10.0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높았다(남자노인: 4.0%, 여자노인: 5.7%).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일 경우 남자노인은 4.3%가 학대를 경험한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7.2%로 여자노인이 높은 비율이었으며, 무배우일 경우에는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의 약 3배 정도의 학대경험률을 보였다(남자노인: 24.4%, 여자노인: 8.9%). 즉, 여자노인은 배우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남자노인은 무배우 상태일 경우 배우자가 있는 남자노인의 약 6배에 달하는 학대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남녀노인 모두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의 노인들이 학대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남자노인들의 경우 단독가구 노인들은 5.1%인데 비해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의 노인들은 1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노인의 학대유형별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폭력의 경우는 전체 노인의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1.0%이었다. 즉, 노인들의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그 다음으로는 방임,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경험하여 신체적 학대의 경험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⁵⁾. 성별로는 경제적 착취와 기타 학대만이 여성노인의 경험비율이 높고, 나머지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과 김한근(1998)의 조사결과에서도 신체적 학대 경험률이 가장 낮고, 언어·심리적(심리·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표 4. 전체 응답노인의 성별·학대유형별 학대 경험비율¹⁾

(단위: %)

학 대 유 형	남자	여자	전체
전 체	8.3	8.2	8.2
신체적 학대·폭력	0.5	0.3	0.3
언어·심리적 학대	7.8	7.7	7.7
경제적 착취	2.0	2.1	2.1
방 입	4.4	2.0	2.5
기 타	0.5	1.2	1.0

주: 1) 전체 65세 이상 응답노인 865명 중 각 유형별 학대·폭력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임.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학대유형은 모두 남자노인의 경험비율이 높으며, 특히 방입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2배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부모 학대 발생빈도 및 이유

노부모 학대의 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노부모 학대 건수 중 42.7%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7%는 2~3개월에 1회, 그리고 11.2%는 월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특성별로는 남자일 경우 거의 매일과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주 1회 이하, 월 1~2회 및 기타 등이 남자보다 높았다.

가해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의 매일 학대한다는 비율은 높아 39세 이하에서는 28.0%인데 비해, 40~49세는 41.5%, 50세 이상에서는 59.1%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학대발생률이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거의

매일 학대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학대자가 노부모의 아들일 경우 거의 매일 학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47.4%이었고, 며느리는 46.3%, 기타 가족원은 10.0%이었다.

가해자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39.5%)이었으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22.1%)이었다. 이 외 가해자 오해(7.0%), 상호 이해 부족(5.8%), 가해자 자격지심(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로 보면 남자일 경우는 경제적 문제(60.0%)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 성격차이(22.5%), 가해자 술버릇(5.0%), 상호 이해부족(5.0%)이 그 다음 순서이었다. 가해자가 여자일 경우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각각 21.7%로 가장 큰 이유였고, 이 외 가해자 오해(10.9%), 가해자의 자격지심(8.7%)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문제의 경우 성별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많아 남자는 60.0%인 데

표 5. 가해자의 특성별 노부모 학대 빈도

(단위: %)

특성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에 1회	기타	계(수)
전체 ¹⁾		42.7	7.9	11.2	24.7	13.5	100.0(89)
성 ¹⁾	남 자	46.2	2.6	10.2	28.2	12.8	100.0(39)
	여 자	40.0	12.0	12.0	22.0	14.0	100.0(50)
연 령 ²⁾	39세 이하	28.0	8.0	16.0	32.0	16.0	100.0(25)
	40~49세	41.5	7.3	14.6	22.0	14.6	100.0(41)
	50세 이상	59.1	9.1	-	22.7	9.1	100.0(22)
교육수준 ³⁾	중학교 이하	60.9	8.7	17.4	4.3	8.7	100.0(23)
	고등학교 이상	34.9	7.9	9.5	31.8	15.9	100.0(63)
결혼상태 ⁴⁾	유배우	46.8	6.5	9.0	23.4	14.3	100.0(77)
	무배우	25.0	25.0	12.5	25.0	12.5	100.0(8)
노부모와의 관계 ¹⁾	아 들	47.4	2.6	10.5	28.9	10.5	100.0(38)
	며느리	46.3	14.6	12.2	19.5	7.3	100.0(41)
	기 타	10.0	-	10.0	30.0	50.0	100.0(10)

주: 1) 무응답 5명 제외 2) 무응답 6명 제외 3) 무응답 8명 제외 4) 무응답 9명 제외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비해 여자는 21.7%이었다.

연령별로도 학대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문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인 데 비해 성격차이는 저연령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이 외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은 상호 이해부족을, 40~49세는 가해자 오해 등을, 그리고 50세 이상은 나머지 이유가 고르게 나타나 별 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특히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일 경우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유배우보다는 무배우자일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노인의

아들일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학대자가 며느리일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성격차이에 의한 학대가 주원인이었다.

3)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발생률 및 의료처치경험률

학대 피해노인 중 신체적 증상을 보인 경우는 8.5%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증상을 보인 경우는 76.6%로 피해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신체적 증상은 남자노인이, 그리고 정신적 증상은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모두 후기노인층보다는

표 6. 가해자의 특성별 노부모 학대 이유¹⁾

(단위: %)

특 성		가해자 오해	가해자 술버릇	가해자 자격지심	피해자 잘못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사소한 말다툼	상호 이해부족	기타 ²⁾	계(수)
전 체		7.0	2.3	4.7	3.5	22.1	39.5	3.5	5.8	11.7	100.0(86)
성	남자	2.5	5.0	-	-	22.5	60.0	-	5.0	5.0	100.0(40)
	여자	10.9	-	8.7	6.5	21.7	21.7	6.5	6.5	17.4	100.0(46)
연 령 ³⁾	39세 이하	8.0	-	8.0	-	24.0	32.0	4.0	12.0	12.0	100.0(25)
	40~49세	7.5	2.5	2.5	2.5	22.5	40.0	2.5	5.0	15.0	100.0(40)
	50세 이상	5.0	5.0	5.0	5.0	20.0	50.0	5.0	-	5.0	100.0(20)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	4.3	4.3	-	21.7	56.5	-	-	13.2	100.0(23)
	고등학교 이상	10.0	1.7	3.3	1.7	23.3	35.0	5.0	8.3	11.7	100.0(60)
결혼상태 ³⁾	유배우	8.1	2.7	5.4	4.1	23.0	36.5	4.1	4.1	12.1	100.0(74)
	무배우	-	-	-	-	12.5	62.5	-	12.5	12.5	100.0(8)
노부모와의 관계	아 들	2.7	2.7	-	-	24.3	59.5	-	5.4	5.4	100.0(37)
	며느리	12.8	-	7.7	7.7	23.1	15.4	7.7	7.7	17.9	100.0(39)
	기 타	-	10.0	10.0	-	10.0	60.0	-	-	10.0	100.0(10)

주: 1) 노부모학대 이유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사회적 이유, 가해자 이성문제 및 결혼반대, 피해자 무시, 피해자 재혼문제, 부모 모시기 싫어서 등이 포함됨.

3) 무응답 1명 제외

4) 무응답 3명 제외

5) 무응답 4명 제외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전기노인층의 비율이 높았다.

학대결과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19.4%가 의료처치를 한 경험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았으며(남자노인: 18.2%, 여자노인: 19.7%),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여 전기노인층의 의료처치 경험률은 후기노인층보다 3.4배나 높았다. 이는 학대로 인하여 나타난 신체 및 정신적 증상이 전기 노인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된다. 즉, 신체적 증상을 가진 경우는 전기노인층

이 후기노인층보다 2.7배나 높고, 정신적 증상 역시 전기노인층이 1.5배나 높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기노인층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4) 노부모 학대 발생시 피해노인의 대응

자녀 및 가족원에 의해 학대를 받은 피해노인의 62.8%가 끝까지 참으며, 7.4%가 무조건 피한다고 하여 상당수의 노인이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24.5%)하거나 ‘주위

표 7. 학대 결과 나타난 신체적·정신적 증상 및 의료처치경험률

(단위: %)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5~74세	75세 이상	
신체적 증상 ¹⁾	9.1	8.3	10.3	3.8	8.5
정신적 증상 ¹⁾	50.0	84.7	83.8	57.7	76.6
의료처치경험률 ²⁾	18.2	19.7	22.8	6.7	19.4

주: 1) 전체 학대건수(94건) 중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비율임.

2)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72건) 중 의료처치를 경험한 비율임.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의 도움을 요청'(4.3%)하는 경우도 28.8%나 되었다.

학대받은 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하게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와 '노인회관'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인이 학대받은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은 본인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측면과 도움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기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노인의 대상은 '따로

사는 자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웃, 친구'와 '목사, 신부님'이었다.

피해노인 중 자녀 및 가족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이유로는 '자녀(가족)이기 때문에'(27.1%),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8.6%), '해결방법이 없어서'(16.9%),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5.3%)의 순이었다. 그 밖의 이유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신세를 지고 있어서와 경제력이 없어서 등과 같이 가해자에게 신체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에 무

표 8. 학대 피해노인의 참는 이유¹⁾

(단위: %)

이유	자녀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해결방법이 없어서	기타 ²⁾	계(수)
비율	27.1	15.3	18.6	16.9	22.0	100.0(59)

주: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기타에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자료: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조건 참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혈육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적인 가치관과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정책방안

1) 노부모 학대의 예방대책

노부모 학대는 다른 가정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원, 특히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신문지상 등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그리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노부모 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미흡으로 정확한 이해와 개념 등에 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 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부모 학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사회문제로서의 인식확대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여도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법에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하여 학대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노부모 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노인의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손상에 의한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노인들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 기인하며, 가족내의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을 부양한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스트레스가 되거나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안적 부양자나 지원이 유용하지 못할 때는 부양자와 노인 중 어느 쪽을 학대자와 피해자로 분류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대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의 확충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부모 부양기정의 지원

노부모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른 의존성, 인지장애에 따른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가 높으며, 신체적, 생리적 건강 쇠퇴 역시 성인자녀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

를 심화시켜 노부모 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노부모 부양을 주부양자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경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부모 중 일상생활 수행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치매나 외상중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노부모 부양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부양자 및 부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3) 노부모 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 중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요구된다. 가정폭력 관련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의 피해자 및 그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자녀들로부터의 학대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증상은 상당수의 피해 노인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이들 피해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호서비스 외에 보건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학대피해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부모 학대 가해자 처벌 및 치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학대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학대빈도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한 폭력이나 학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학대원인도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5) 노부모 학대 관련법의 보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앞서 노인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에 대한 배려없이 처벌규정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 등도 모두 아내학대에 관련된 것으로 노부모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의 보완을 통해 노부모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만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비

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의존적인 노인층의 증가는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학대 피해자인 노인과 가해자인 부양가족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사후 치료적인 접근보다는 학대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즉, 노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별지